

(붙임 1)

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

I 개정 필요성

- 울산광역시청과 ‘이차전지 특화단지 투자기업 통합금융지원 업무협약(MOU)’을 체결*(23.11.9)함에 따라 이차전지 특화단지내 이차전지 관련 업종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「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을 개정

* 「울산광역시청과의 업무협약(MOU) 체결(안)」 (울산업무팀-2855, 2023.11.8.)

II 주요 개정 내용

- 전략지원부문(A8: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)에 축전지제조업*뿐 아니라 「울산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하는 이차전지 관련 업종** 확인서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」을 지원대상에 포함

* 「축전지제조업」(표준산업분류코드:28202)은 이미 지원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어있음

**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광물, 소재(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 등), 관련 부품·장비 및 기술 등에 해당되는 기업

-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내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, 울산테크노파크는 해당 업체가 이차전지 관련 업종 영위 여부를 심사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
-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울산본부앞으로 배정 신청서 및 변동보고서 등 자료 제출 기한일을 ‘매월 13일까지’로 변경
 - (현행) 매월 15일까지 → (변경후) 매월 13일까지

III 시행일

- 2024.1.1일 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